

행정 관련 국가인권위 결정문 모음집 (2001. 11~ 2003. 9)




행정 관련 국가인권위 결정문 모음집 (2001. 11 ~ 2003. 9)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CPal.71

**행형 관련
국가인권위
결정문 모음집**

(2001. 11~ 2003. 9)

 **인권운동사랑방**

목 차

<의료>

1. 구치소내 수용자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1p
2. 아픈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권고 5p
3. 수용시설의 의료방치에 따른 수용자 사망과 관련한 권고 9p

<징벌 및 계구>

4. 징벌권 남용에 대한 개정권고(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을 중심으로) 15p
5. 징벌제도의 전반적 제도 개선 권고 20p
6. 계구남용 헌법소원(2001헌마163)건에 대한 인권위 의견서 28p
7. 계구의 종류 및 사용 요건에 대한 권고 35p
8. 유치장안에서의 수감사용에 대한 권고 46p

<서신 집필 및 접견>

9. 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에 대한 관련법개정 권고 51p
10. 수용자합동접견시행지침 제6조제3항의 개·폐정 권고 56p
11. 수용자 집필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선 권고 63p

<처우>

12. 징벌실 및 거실 화장실에 대한 개선 권고	70p
13. 유치장내 흡연권 보장에 대한 기각 결정	75p
14. 알몸검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실무자 인권교육 권고	77p
15. 유치장 수용인에 대한 안경착용 권고	83p

<기타>

16.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방해 사건에 대한 권고	87p
17. 교도관의 수용자 구타사건에 대한 권고	93p
18. 군행형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개정 및 폐지 권고	97p
19. 장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 권고	100p

<참고>

20. 군인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102p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서

사 건 : 2001 - 2 (구치소내 의문사 진상규명)
 진정인 : 구○○ (피해자의 제)
 피해자 : 구○○ (사망자)
 피진정인 : 울산구치소장

진정인이 2001년 11월 19일 발생한 울산구치소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진정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진정내용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개시를 의뢰한다.

이 유

1. 사건 요지

피해자는 2001.4.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2,5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1.11.16. 21:30경 노역환형을 위하여 연행되어 2001.11.17. 00:30경 울산구치소에 입소하였고 같은 날 11:00경 구치소 의무관의 검진을 받은 후 병사동에 입실하였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2001.11.18. 19:20경 울산 백천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20:15경 다시 울산 동강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11.19. 03:00경 사망하였다.

2. 진정 요지

진정인은 사망자의 신체상태로 보아 구타에 의한 피하출혈이 사망의 원인으로 의심되며 피해인의 건강상태가 위급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장시간 구치소 당국이 적절

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하였다.

3. 관련법령 검토

먼저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호에서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와 권한으로 규정하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4. 증거 및 판단

먼저 관련자의 진술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온순한 성격으로 고등학교와 군복무를 마치고 부친이 경영하던 울산시 기장면 소재의 정미소 일을 돕다가 1988.2.경 현대자동차(주)에 입사하여 1996.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무직으로 잦은 음주를 하여 1997.8.이후 경남도립정신병원, 부산을지병원, 울산해성병원등에서 4차례에 걸쳐 알콜중독증세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증1), 그 이후에도 만성 알코올 중독과 관련하여 간경변, 지방간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벌금미납으로 경찰관에게 연행된 날의 행적을 살펴보면 2001.11.16(금)06:00경 일어나 이웃의 주차장에 가서 관리인 김○○의 주차관리를 돕고 인근의 체육공원에 가서 동네사람들과 팔씨름도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갔으며(증2), 20:00경 가족과 함께 수량미상의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자택으로 찾아온 염포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임의동행 되었다.(증3)

처음 연행한 순경 김○○의 진술에 의하면 같은 날 21:20분경 김○○경장, 김○

순경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형집행장을 보이면서 "구○○씨 나오세요" 하니 순순히 따라 나왔으며 차로 동승해 오던 중 몇 가지의 질문을 해보았는데 "요즘 음주운전 한 두 번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라고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데모하다 해고당했지요"라는 말을 하였으며 파출소에 와서 주소 전화번호 등 질문에 분명히 답하는 등 술냄새가 조금 났으나 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하였고, 21:40분경 인계 받은 동부경찰서 형사계 하○○경장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하며 22:30분경 울산지방검찰청에 인계하였고 동 지방검찰청 당직자 장○○ 입회계장은 그 날 검거자가 많았고 구○○는 제일 늦게 도착하였으며 서류정리에 시간이 지체되어 23:30분경에 울산구치소에 인계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울산구치소의 당직교감 황보○○는 검찰청 공익요원이 승용차로 구○○를 데려왔는데 입소서류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보안과 사무실에서 약 10분간 소지품 회수를 하였는데 아픈 곳이 있는지 질문하니 관절염이 조금 있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증세는 없었으며 술냄새가 조금 나서 독거실로 배정한 후 장○○교위, 정○○교도, 손○○교감에게 11.17. 00:30분경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장○○교위는 00:20분경 구○○의 노역집행지휘서를 접수하여 00:30분경 보안과 금연휴게실에서 황보○○교감등의 신입검사를 입회하면서 수용자 신분카드 등을 기록하였는데 신입검사는 소지품 등을 모두 압수하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라, 입을 벌려라, 앉았다 일어서라, 항문을 벌려라 등으로 신체상처나 특이사항을 확인한다고 진술을 하였으며, 손○○교감은 인수 후 신입검사를 하였는데 퇴행성관절염이 있어 금년3월에 울산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멍든 자국 등의 상처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신입검사 후 정○○교도와 함께 5층3사22호 독거실로 입실시켰으며 07:05분경 기상 점검차 가 보았더니 그냥 누워있어 앉게 한 후 점검을 마쳤고, 그 후 07:25분경 식사시간에 다시 갔더니 식사를 더할 의향이 없음을 말하여 4층인 1사2실의 노역실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1사동 근무자 성○○교도는 07:40분경 손○○교감이 데려왔는데 얼굴이 초췌하고 손발을 떨면서 몸이 불편한 것 같아 부축하여 입실시켰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차려주라고 한 후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또렷하게 대답을 잘 못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호감호가 필요하다고 화이트보드에 기록 후 다음 근무자인 김○○교사에게 설명하고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노역실인 같은 방 수감자 김○○는 피해자가 08:00경 방에 들어왔는데 들어 올 때 손과 다리를 떨고 얼굴색이 창백한 등 병색이 깊어 보여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구치소 의무과장 신○○은 10:00경 피해자에 대하여 신입검진을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혈압이 조금 높아(180/105) 혈압약을 처방하고 병사에 입방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신체상태는 확인한 바 없고 병세는 느낄 수 있었으나 응급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병사동 재소자 한○○은 피해자가 11:00경 들어올 때 완전히 송장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았고 똥오줌을 싸는지 냄새가 지독해 같은 재소자인 박○○이 옷을 벗겨 목욕을 시켰는데 그 때 보니 양쪽 팔꿈치, 정강이, 가슴, 엉덩이등 신체 전신에 상처가 있었고 간질발작을 하였으며 피가 섞인 오줌을 싸기도 하였고 16:00경에는 피(약 2컵)를 와락 토했으며 왜 이러냐고 물어보니 맞았다고 했으나 어디에서 맞았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고 수시로 화장실 쪽으로 가다가 넘어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밤에는 조용해진 것 같았으며 일요일인 다음 날 16:00 다시 똥을 싸 후 다시 조용해져서 보니 이상한 것 같아 간병인 송○○를 불러 확인하라 하였는데 간병인이 혈압을 재다가 "큰일났다"하고 구강인공호흡을 시키다 업고 나갔다는 진술을 하였고(증 4), 같은 재소자인 간병인들의 진술도 이와 유사한 정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후송된 울산백천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홍○○은 2001.11.18. 19:30분경 펜타바람의 피해자를 엠브런스로 데려왔는데 이미 호흡이 없고 동공이 열려있고 항문괄약근이 이완되어 있는 등 사망의 징후를 보았으나 심전도를 한 결과 약간의 전기적 신호가 있어 전기충격을 4번정도 하니 약간 돌아오는 것 같아 20:00분경 산소호흡기가 있는 동광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며 교도소직원으로부터 간질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차트(chart)에 기재하였고 사망진단서는 이를 토대로 원장이 발급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증5)을 하였다.

다음 2001. 12. 19 위원회에 보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법의학과 의사 조○○ 및 권○○ 작성의 사체 부검감정서는

- (1) 부검 소견상 팔다리에서 다수의 광범한 연부조직 출혈을 보며, 특히 양쪽 대퇴부에서는 내측 후면 일부를 제외한 전체 부위에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을 보는데 이와 같은 대량의 연부조직 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2) 외표 검사상 결막은 창백하고 시반 형성이 약하며, 내부 장기 검사상 실질 장기는 빈혈상인 등 실혈에 의한 사망시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되는 점
- (3) 간에서 고도의 지방간 및 간경변 소견을 보는바 이와 같은 간 질환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이 건 변사자의 기왕력상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고 하는바 알코올 금단과 관련된 진전성망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광범한 연부조직 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는 건에서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을 먼저 고려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팔 다리에 형성된 다수의 광범한 연부조직 출혈로 인하여 쇼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직접 사인을 외상성 쇼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교수 이○○과 조교수 이○○은 피해자

의 신체 여러 부위에서 관찰되는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은 원인물체를 알 수 있는 손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피하출혈 부위에서 해당 피부면에 표피박탈을 동반하지 않았고 일부 관찰되는 표피박탈도 특정모양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사망 경과가 광범위한 피하출혈에 의한 쇼크에 전형적이라고 보기에 그 경과가 길고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점등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빙자료를 합쳐보면, 피해자는 구치소 입소 전까지는 비록 알콜의존증과 퇴행성관절염의 기왕력이 있는 상태였으나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한 신체상태의 이상이 없었다는데 입소 다음날 아침 07:30 노역실인 혼거방으로 이동한 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모습이 발견되었고 같은 날 11:00경 병사 동료 재소자들에 의하여 전신에 멍든 자국 등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또한 사체의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이 발견된 점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구치소 입소 후 누군가에 의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정도의 외상을 입은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피해자가 병사에 입소 후 위급한 상태에서 상당기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의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서

사건번호 : 02진인680

사 건 :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요구

진 정 인 : 육○○ (피해자 육○○의 배)

피 해 자 : 육○○ (청송교도소 수용번호 xxx번)

피진정인 : 청송교도소장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

피진정인의 감독기관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8-2

주 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위 검찰청 의성지청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가 2000. 11월 부터 섭식불능, 저알부민혈증, 전반적인 영양결핍과 정신적 고통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니 근본적 치료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였다.

2. 관련법령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3. 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판단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아 래

○ 피해자 육○○은 부정물품은닉으로 2000. 11. 경 금치2월을 받아 징벌 집행 후 섭식장애와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어 오던 중 현재는 하루 한번 씩 영양제를 맞고 있으며 이삼 일에 한번 식사를 하지만 식사 후 5분 내 음식물을 모두 토하고, 극심한 정신장애로 교도소 직원이나 동료 재소자들을 죽이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며, 천장이 전부 음식으로 보이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청송교도소 의무과장 한○○이 2002. 6. 8.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1년 초부터 음식 섭취시 구토를 자주 하여

2001. 2. 11. 안동병원 신경과에 이송 진료한 결과 신경성 식욕부진(거식증), 근위축(경도)으로 진단되었으며, 동 병원 의사의 진료소견을 참고로 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1. 5. 18. 영천 마야병원 석○○ 원장(정신과 전문의)이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섭식장애로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1. 6. 21. 진주교도소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는데, 위 교도소에서 구토와 충동적인 폭식, 강박적인 섭식으로 영양장애 및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어 진주의료원에 이송, 위내시경 검사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표재성 위염, 급성 십이지장염으로 진단받은 바 있었고,

2001. 8. 13. 양측하지 부종이 있어 검사결과 저단백질 혈증으로 밝혀져 고단위 단백질(알부민 등)을 투여하였으나 상기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결핍도 악화되었고,

2001. 9. 20. 진주의료원에서 다시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영양결핍, 중증동서맥(맥박40회)으로 밝혀져 심장 박동기 부착 후 치료를 통해 맥박이 55~60회로 돌아온 병력이 있으며,

2001. 11. 16. 영양상태가 동년 9. 20. 보다는 다소 호전되어 동년 12. 6. 청송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었다.

진주교도소로 이송 될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체중 46kg에 보행장애는 없었고, 근위축도 경도였으나, 다시 청송교도소로 이송되어 왔을 때는 근위축과 요통이 심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어 휠체어 생활을 해야만 했다.

2001. 12. 6. 이후에도 구토와 충동적인 섭식은 악화되었고, 수액으로 영양공급을 하였음에도 영양결핍과 섭식장애가 심하고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2002. 4. 12. 안동성심병원에 이송 진료한 바, 중증동서맥과 전해질장애(칼륨 2.7.) 및 당뇨가 있으므로 동병원에서 치료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

견이 있어

2002. 4. 13. 경북대학병원에 다시 이송하여 진료한 결과 영양결핍증과 신체화장애의증, 전환장애의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었다.

○ 현재 상태는 거식증, 영양결핍증, 서맥 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불량하므로 갑작스런 급사(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매우 높다.

4. 결론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피진정인 및 위 집행정지의 지휘권자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의 감독기관인 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하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서

사건번호 : 02진인138

사 건 : 구치소의 환자방치로 인한 생명권 침해

진 정 인 : 오○○(피해자의 사위)

서울특별시 ○○구 ○○2동 000-00

피 해 자 : 박○○ (고인)

피진정인 : 1. ○○구치소

경기도 수원시 ○○구 ○○2동 000

2. 홍○○(전 ○○구치소 의무사무관)

성남시 ○○구 ○○동 ○○○○아파트 000동 0000호

주 문

1. 피진정인 ○○구치소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방치행위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진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 피진정인 홍○○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위로 2002. 1. 1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는 핸드폰 절도 혐의로 구속, 2001. 11. 28.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2. 1. 6. 의식불명에 빠져 형집행정지로 석방됨과 동시에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동년 3. 25. 사망하였다.

다. 피진정인 홍○○는 2001. 6. 12. 부터 동년 12. 25. 까지 ○○구치소의 의무 사무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 보건소에 근무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및 증거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2001. 11. 28. 피해자 박○○이 ○○구치소에 입소할 당시부터 기침을 하고 숨가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어 동료 수용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방치하였으며 피해자의 폐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확보하였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 피진정인 ○○구치소는 피해자가 발병일 이전 정상적으로 취식하였으며, 몸을 자주 굽고 기침을 심하게 하여 전염을 우려한 동료 수용자들이 피해자의 전실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의무과 진료 결과 피부는 전염성이 없고, X-ray 촬영 및 객담 검사 결과 결핵균은 음성판정이 나와 전실의 필요성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전혀 호소하지 않아서 상태의 심각함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진정인 홍○○는 2001. 12. 10. 피해자에 대한 진찰 결과 피해자가 기침은 가끔 하나 가래는 없다고 하여 흉부 X-ray 촬영을 하였던 바 만성협착성폐질환으로 추정되었으나 위 질병에서 흔히 병발할 수 있는 폐결핵, 기관지 천식증, 폐렴증 및 기관지확장 등의 의학적 소견이 없어서 투약하지 않았으며 당일 피해자의 건강 상태는 정상적이고 양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인정된 사실

1) 수감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피진정인의 의료방치

○ 피해자가 2001. 11. 28. ○○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건강진단은 교도관 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작성된 건강진단부에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의 수치만 기재되어 있고 혈압 등의 측정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

○ 입소 이틀 후인 동년 11. 30. 피해자는 3인 혼거실로 전방되었는데 당시 함께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은 피해자가 방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몇 걸음을 걷는 것을 힘들어 할 정도로 숨이 가빠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동료 수용자들이

피해자의 입병사를 요구하였으나 교도관들은 '하루 만에 못 보낸다'며 묵살하였다.

○ 2001. 12. 1. 동료수용자 김○○의 요청으로 의무과 진료가 이루어졌으나 피진정인 홍○○는 피해자의 증상이 약을 쓸 필요가 없는 가려움증 정도라고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위 의무과 진찰 후에도 피해자의 숨 가쁨 증세가 심해지고 기침을 자주 하여 위 김○○의 요청으로 2001. 12. 10. 의무과 진료가 이루어졌고, 피진정인 홍○○는 피해자에 대한 X-ray 촬영을 지시하여 외부 판독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치료나 관찰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 2001. 12. 10. 피해자에 대한 위 X-ray 촬영 후 피해자의 상태에 차도가 없어 동료 수용자들이 12월 내내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고, 2001. 12. 4.부터 12. 16. 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다"고 근무일지에 기록까지 하면서도, 교도관들은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 2002. 새해 들어 피해자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002. 1. 6. 오전, 다량의 검은 대변을 옷에 배설하여 위 김○○이 거실 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성명미상 교도관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술서를 쓰라고 하여 김○○은 '피해자가 대변을 못 가리고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 혼거생활에 부적당하니 병사로 옮겨 달라'는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 위 같은 날 점심시간, 피해자가 계속 기침을 하며 토악질을 해 국물만 겨우 먹이고 눈이 풀려 있는 등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위 김○○은 교도관에게 피해자의 시찰을 요구하여 교도관이 잠깐 다녀갔으나 교도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저녁시간,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아예 하지 못해 교도관에게 '이 아저씨 몸이 이상하다, 밥을 못 먹었다'고 애기한 후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보니 벽에 머리를 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눈이 풀려 있어 의무과에 이송, 이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들어 ○○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2002. 3. 24. 사망하였다.

2) 피해자의 사인 및 수감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전문의 소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의사 김○○ 작성의 부검감정서 및 국립의료원 전문의 백○○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는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해 호흡부전이 유발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내원시 무호흡 및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맥박 및 혈압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뇌손상이 병발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지속되면서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 피해자는 입소 당시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했던 경우로 판단되므로 약물투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약물투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환자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악화되지 않는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의 변조

○ 위원회가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한 후 2002. 3. 18. 피진정인 ○○구치소에 피해자의 건강진단부 제출을 요구하여 동년 3. 21. 이를 수령한 바, 위 ○○구치소측이 위원회에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진단부에는 2001. 12. 1. 과 동년 12. 10. 및 2002. 1. 4. 세 차례 의무과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었으며, 세 차례 모두 피해자의 혈압, 체온, 맥박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 그러나, 2002. 4. 26. 피진정인 홍○○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하던 중 홍○○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건강진단부가 구치소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다름을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홍○○가 소지하고 있던 건강기록부에는 위의 날짜에 혈압, 맥박, 체온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 위의 사실에 대해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 홍○○는 2002. 3. 서대문 보건소로 찾아온 ○○구치소 의무주임 최○○에게 피해자의 건강진단부에 혈압, 맥박, 체온 등을 적어 넣으라고 지시하였으며, ○○구치소로 돌아간 최○○가 의무과 직원 김○○, 원○○에게 위의 사항을 지시하여 당시 구치소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건강진단부의 일부 내용을 변조했음이 확인되었다.

3. 위원회의 판단

가. 피진정인 ○○구치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생명권 침해

○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 구금시설에서는 이의 구체적 현현으로 행형법 제8조제2항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 수용 또는 적당한 치료를 받게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도소 밖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의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구치소 입감 당시부터 기침과 정신이상,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었으며 정신이상 증세로 인해 본인의 건강을 정확히 설명할 상태조차 되지 않아 동료 수용자들이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와 병실수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구치소는 피해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동료수용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입병사 요구도 묵살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이상증세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질병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또한 ○○구치소내 단 한명의 의사도 없었던 2001. 12. 26.부터 2002. 2. 23. 까지 수용자의 의료문제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2002. 1. 6. 응급조치의 부재로 피해자의 심장정지사태를 야기하는 결과를 발생하였다.

○ 따라서 위원회는 피진정인 ○○구치소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방치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권침해행위로 인정한다.

나. 피진정인 홍○○의 불법 행위

○ 교도관 직무규칙에 의하면 의무관은 '신입자 또는 수용자 중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자나 폐질이 있는 자, 병사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자, 일반병원에 이송하거나 의무관이 아닌 의사로 하여금 직접 또는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피진정인 홍○○는 피해자가 호흡곤란 증세와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001. 12. 1. 위 구치소 의무과에 진찰을 받으러 왔으나 피부병에 대해서만 진료한 후 1차 진료를 끝냈으며, 동년 12. 10. 피해자에 대한 X-ray 촬영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외부병원 판독결과를 확보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진정인 홍○○는 당시 X-ray 촬영 결과 피해자의 상태를 만성폐쇄성폐질환

으로 추정하여 외부병원 판독을 의뢰하였으며 위의 질환이 단순한 감기나 파로만으로도 위급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과거 목공과 철공일에 종사하여 폐질환이 만성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후 피해자에게 증세의 악화를 예견케 하는 증상이 있는지 계속 관찰하거나 병사에 수용하여 예후를 주시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적당한 치료를 받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피진정인 홍○○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위 박○○의 사위인 오○○이 2002. 1. 17.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정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진정인 홍○○은 2002. 3. ○○○ 보건소로 찾아 온 ○○구치소 의무주임 최○○를 만나 위와 같이 자신이 위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 등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위 구치소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건강진단부에 '혈압, 맥박, 체온'등을 첨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라고 지시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구치소 및 홍○○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고(당시 ○○구치소장 김○○은 2002. 6. 30. 정년퇴직하였다), 피 진정인 홍○○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서

사건번호 : 02진인1064·02진인126 부분병합

사 건 명 : 정벌권 남용

진 정 인 : 1. 박○○

2. 권○○

피진정인 : 1. ○○교도소장

2. ○○○○교도소장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 : 법무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규율및정벌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을 "소장은 규율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과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제출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 박○○은 2002. 1. 28.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02. 5. 피진정인 ○○교도소장이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진정인 권○○은 2001. 10.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01. 2. ○○○○교도소 수감 당시 피진정인 ○○○○교도소장이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관련법규의 개선을 요구하며 2002. 1. 15.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 박○○

진정인은 2002. 5. 8. 입실거부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같은 달 14. 훈계로 석방되었는바, 조사실에 수용된 후 조사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면회·운동·서신수발·도서열독·TV시청 등을 금지당한 것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 권○○

진정인은 2001. 2. 21. ○○○○교도소에서 부정서신 작성 등으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같은 달 27.까지 특별정신교육·집필·서신수발·운동·접견·자비물품 사용 제한·신문열독이 금지되었는바, 이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법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및 법무부의 의견

조사실 수용자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조사방해의 우려가 많으므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하 '징벌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그런 우려가 없는 조사수용자까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관련 법률

가. 행정법 :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해당 법조문 없음.

나. 행정법시행령 제143조(징벌혐의자의 수용)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조사절차) ②항

소장은 규율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기간 중 당해 수용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1. 1. 18. 단서신설>

4. 인정된 사실

가.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의 진술 및 동정시찰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진정인 박○○의 경우를 살펴건대, 2002. 5. 8. 시력 장애로 인한 혼자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독거실 수용을 요청하며 입실을 거부하였으나, 본인이 자술서에 입실 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였고 조사실 수용도 순순히 응하였다.

○ 위 박○○은 2002. 5. 8. 조사실에 수용된 후 7일 동안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조사기한 마지막 날인 5. 14.에야 조사를 받아 지시불이행으로 훈계처리 되었다.

○ 또한 진정인 권○○은 2001. 2. 21. ○○○○교도소에서 허가없이 청원서를 작성하고 도서열독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책(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조사실에 수용된 자로, 위 청원서와 책은 적발 당시 압수되었으며 같은 달 27. 금지2월에 처해졌다.

나. 법무부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교도소에서 제출한 2002. 5.부터 6.까지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시찰보고서 및 조사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교도소에서 2002. 5.부터 6.까지 조사실에 수용된 수용자 102명에 대하여 징벌규칙 제7조제2항의 적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9명을 제외한 93명의 조사실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실 수용과 동시에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 또한, 위의 제한이 없었던 9명중 6명은 징벌 집행증인자로 조사실 수용 당시 이미 위의 사항이 금지된 상태였고 나머지 3명은 폭행 피해자였는바, 결국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실에 수용된 수용자 전원에게 위의 사항이 금지된 것을 알 수 있다.

○ 위 102명 중 실제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68명이고 나머지 34명은 무혐의나 임중훈계 등으로 조사실에서 풀려났으며 위 조사실 수용자중 '금지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소명되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었다.

5. 판단

가. 진정한 박○○의 경우 자술서에 입실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였고 조사실 입실도 순순히 응한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이나 조사가 방해될 우려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한 권○○의 경우 부정서신 및 도서의 적발당시 이를 압수하였으므로 증거가 인멸될 우려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교도소 조사실 수용자중 폭행 피해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해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무부의 의견처럼 징벌규칙이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조사실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은 징벌규칙 제7조제2항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인 바, 위 구절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표현으로 위 조항의 적용의 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수용자의 경우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에 정한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형행법 집행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바. 그러나, 징벌규칙 제7조제2항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형행법 시행령에서(제143조) '소장은 징벌혐의자로서 조사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실에 수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징벌규칙은 접견·서신수발·전화통화·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 사용 등의 기본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위헌적인 요소마저 내재한다.

사. 징벌규칙에 대한 교도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하여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도 반복될 위험이 많고, 조사실 수용자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침해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구급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징벌규칙 제7조제2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8조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 조항을 주문과 같이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의 결

사 건 : 02진인643, 1096, 1575(병합) 구금시설의징벌권남용

진 정 인 : 1. 000
2. 000
3. 000

피 해 자 : 000, 00교도소 수용 중

피진정인 : 1. 0000보호감호소장
2. 00교도소장
3. 00구치소장

피진정인의 감독기관 : 법무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1. 징벌의 대상행위로 정한 수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교도소의 안전과 내부질서 유지의 목적에 비추어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백히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 징벌의 종류 중 금치의 집행내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접견, 서신수발, 집필, 운동, 의료와 관련한 자비부담물품의 사용 등을 허용하고,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양정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며,

3. 징벌위원회를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징벌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징벌집행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자 징벌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 및 피해자는 구금시설 내 수용 중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았다. 과도한 징벌집행은 피진정인들의 징벌권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000

진정인은 2002. 1. 00. 06:45경 아침 인원점검 시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처분을 받은바, 이런 사유로 징벌을 받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 000

진정인은 2002. 6. 헌법소원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인권0000에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작성한 편지가 부정서신이라며 금치 2월의 징벌에 처해졌는바, 개인의 생각을 적은 서신을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는 것과 징벌기간 중 청원 등을 위한 집필이 허가되지 않은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다.

다. 000

2002. 0. 00. 접견 온 부인 000에게 '기동감찰반이 총을 차고 다녀 위압감이 느껴지니 인터넷에 들어가 알아보라'고 한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금치2월에 처해졌는바, 가족에게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한 것으로 인해 접견, 운동, 서신, 독서, 집필 등 모든 권리가 금지된 채 독방에 수감되는 것은 부당하며 정확한 징벌사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000(02진인643)

진정인의 진술조서, 근무자경위서, 징벌집행부, 징벌요구서 및 징벌의결서, 참고인 수용자 000의 자술서에 의하면,

(1) 진정인은 특가법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1. 2. 8.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이며, 수감 중 진정의 원인이 된 위 금치 이외의 징벌을 받은 바 없다.

(2) 진정인은 2002. 1. 00. 06:45 경 아침 인원점검 시간에 거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적발되어 지시불이행으로 조사실에 수용되었으며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직업훈련,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방송청취, 집필, 자비물품사용 등이 금지되었다.

(3) 당시 근무자의 경위서에는 '아침 점검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교육을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2002. 1. 00. 상의를 탈의하고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진정인 또한 인원점검시 화장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세수를 한 후 설사가 나서 용변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동료수용자 ○○○는 당시 '진정인이 런닝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다가 관구교감에게 지적받은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이에 대해 '먼저 세면을 하고 용변을 본 후 엉덩이를 닦고 나서 얼굴을 닦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진정인은 2002. 2. 0. 지시불응으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제3조제15호 및 동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금치 1월에 처해졌으며 2002. 2. 00. 징벌이 종료되었다.

(6) 위 인정사실로 볼 때, 진정인은 위의 금치처분 외에는 징벌을 받은 바 없이 규율을 잘 준수해 온 수용자로, '아침점검시간에 옷을 단정히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 지 말고 인원점검에 참석하라'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지시 불이행으로 징벌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 고의로 인원점검에 불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진정인에게 적용된 징벌조항인 위 규칙 제3조15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관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입실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조항은 교도관의 지시명령의 내용, 위반의 정도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교정의 목적과 관계없이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경미한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훈계 또는 경고를 주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충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치1월의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벌집행이라고 판단된다.

나. ○○○(02진인1096)

수용자신분카드, 진정인의 진술서, 징벌요구서 및 징벌의결서, 피진정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1) 진정인은 2001. 8. 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2. 4. 00.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 진정인은 2002. 6. 00. 본인의 거실에서 인권○○○○○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6. 00. 작업장에 있는 우편함에 넣었는바, 당시 공장의 관구계장인 교도관 ○○○는 위 서신을 교무과로 넘겼으나, 검열결과 진정인의 서신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허위주장이라는 이유로 행정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 4호 및 행정법제18조2의 5항에 따라 같은 달 00. 폐기처분되었다.

(3) 진정인이 작성한 서신에는 ①○○교도소 근무자들의 근무형태가 위압감을 주고, ②사소한 말다툼도 무조건 조사수용 시키며, ③본인도 이러한 처분을 당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나 징벌기간에는 보고문을 불허하고, ④수용자들이 거실에서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징벌에 처해지고, ⑤수도사용의 제한으로 위생에 지장이 있으며, ⑥기본적 의료행위가 실시되지 않고, ⑦○○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으며 ○○○구치소에서 근무자에게 권리행사방해와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서신이 폐기처분된 6. 00. 진정인은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접견, 서신, 운동, 작업등이 금지되었다.

(5)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생활에서 특별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불만 사항으로 마치 교정행정의 일선 직원들이 징벌에 강조점을 두고 지나친 간섭과 제한으로 억압하고 각종 규정을 위반하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행정처리를 한다는 내용 등으로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허위 내용으로 서신을 작성하여 발송한 차'라 하여 2002. 6. 00.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제3조제25호 및 제4조제1항제6호와 제5조제2항에 의거 진정인을 금치2월의 징벌에 처하였다.

(6) 진정인에게 적용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제25호는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진정인이 다른 교도소에서 받은 처우나 ○○교도소의 처우에 대한 느낌

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헌법소원 등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에 보내려고 한 행위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로 단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규칙의 적용으로 보인다.

(7) 가사 진정인이 작성한 편지가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허위사실'이라면 행형법 시행령제62조(서신의 검열)제3항제3호에 따라 서신발송을 불허하고 폐기처분하면 될 것인바, 서신작성을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에 처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된다.

다. ○○○(02진인1575)

수용자 신분카드, 피해자의 자술서 및 진술조서, 징벌의결서, 2002. 8. 접견표, ○○○구치소 기동감찰반 운영계획, 참고인 경비교도대 ○○○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02. 2. 0.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 1심 재판에서 10월을 선고받아 진정을 제기할 당시 항소계류 중이었으며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이다.

(2) ○○○구치소는 2002. 8. 0. 부터 '수용자 체반 규율위반 사태를 점검하여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용자 기초질서 확립유지를 위한 수용자 계도 활동과 감찰 업무 중 관규위반자 적발시 초동조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목적을 위해 감찰반은 거실 및 의체검사를 불시에 실시하고 거실 내 정리정돈 상태 및 세탁 확인, 수용자간 90도 인사행위, 수용자의 탈의 및 통모, 기타 수용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캠코더 및 휴대용 녹음기, 무전기, 금속수갑, 가스총 등의 보안장비를 휴대 활용하고 기동복, 기동화, 기동모를 착용하였다.

(3) 피해자는 위 기동감찰반이 잭빛 복장 및 신발, 모자를 착용하고 총을 소지하며, 캠코더를 휴대한 채 전 사동을 기습적으로 순찰해 평소에도 위압감을 느끼던 중 같은 달 00. 동료수용자가 기동감찰반에게 지적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는 처 ○○○과 접견하던 중, 기동순찰대 활동과 관련하여 '교도관들이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협박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니,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라'고 한 사실이 있다.

(4) 당시 접견을 감독하던 경비교도대 ○○○은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으나, 접견이 끝난 후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 관련처우가 금지되었다.

(5)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기동감찰반이 휴대하고 있는 것이 가스총임에도 이를 권총으로 표현했다는 것으로, '권총을 차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권총을 차고 있어 위압적으로 협박하는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기동감찰반의 활동에 위압감을 느꼈다면 면담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야 함에도 면회 온 부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6) 피해자는 2002. 9. 0. 허위사실 유포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제3조25호와 동 규칙 제4조제1항6호 및 제5조(징벌의 가중)2항에 따라 금치2월의 처분을 받았다.

(7) 이상의 인정사실을 살펴 볼 때, 피해자가 유포한 허위사실이란 '가스총'을 '권총'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인 바, 외관상 모양이 비슷한 것을 혼동하여 가족에게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징벌에 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법 집행이라 할 것이다.

(8)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25호는 '교도관 또는 다른 수용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처벌받게 할 목적'이 뚜렷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에 대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누구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접견당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피해자에게 금치2월의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된다.

4. 현행 수용자 징벌제도의 문제점

가. 행형법은 징벌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포괄규정을 두어 징벌대상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의적이고 과도한 징벌집행의 소지가 있다.

징벌은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징벌의 대상인 규율위반 행위를 행형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하위법에 위임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할 것인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는 '교도소 등의 안전과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 수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여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교도소의 안전,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¹⁾

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27조는 '규율 및 질

나. 행형법은 독거실(징벌실)에 구금하는 '금치'에 대하여 징벌의 종류로 '금치 2월 이내'라고만 규정해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금치의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반면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징벌의 집행)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징벌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상위법인 행형법에서 징벌로 규정한 금치를 '가두어 두는 것' 이상의 의미로 확대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치의 집행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하므로 징벌 집행의 내용 중 접견, 서신수발, 집필, 운동, 자비부담물품의 사용금지 등의 일률적인 제한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형법은 경중에 따라 5종의 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자규율및징벌에 관한규칙 제4조는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 34가지 중 31호와 32호를 제외하 나머지에 대하여 모두 금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징벌집행의 대부분이 금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벌양 정기준을 다양화하고 금치의 기간 또한 가급적 제한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벌은 수용자가 처우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을 의결하기 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²⁾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고, 징벌혐의자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서면심리만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징벌혐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대리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행형법은 징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교도소 등의 부소장과 과장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인사의 임명권을 소장에게 두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징벌위원회의 구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은 구금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구금자를위한최저기준규칙 제30조 제2항은 "피구금자는 자신에 대하여 주장되는 위반사실을 통고받고 이에 대해 항변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징벌 받지 아니한다. 권한 있는 기관은 사건의 철저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현재 징벌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징벌 결정에 대한 수용자의 제심 또는 불복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³⁾ 징벌 결정을 받은 수용자는 사후에 권리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사후구제를 도모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 해도 접견, 서신, 집필이 금지되는 등 외부와의 교통권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제소기간을 준수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더구나 징벌처분의 경우 그 기간 중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그 처분이 정지되는 등의 이익이 있을 것인 바, 집필 등의 권리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이런 소송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벌 결정에 대한 불복의 절차로서 수용자에게 제심의 기회를 주거나 또는 정지신청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각 진정인들에게 집행된 이 사건 징벌들은 그 사유 및 집행정도가 진정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자들에 대한 징벌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그 법적·제도적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수용자 징벌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6. 16.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원 조미경

위원 신동운

3 1998. 12.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 원칙' 제30조 제2항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제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

2001. 12. 15. 위 사건의 청구인 정○○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01진인535)하여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이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위원회의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청구인은 1999. 11. 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해 11. 8. 광주교도소에 입소하였으며, 같은 해 12. 28.에 특수강도죄로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2000. 2. 24.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범 노○○, 장○○과 광주교도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법정계호 근무중인 교도관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해 3. 7. 서울에서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면서 바로 조사실에 수용되어 금속수갑 2개(이중 금속수갑)가 채워지고, 3. 11.부터는 가죽수갑 1개가 추가로 채워졌으며, 같은 해 3. 21. 징벌위원회가 개최되어 청구인에게 금치 2월의 징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2000. 3. 7.부터 계구가 사용되었는데, 광주교도소에서는 금속수갑 2개(이중 금속수갑)를 2000. 3. 7.부터 2001. 4. 2.까지, 그리고 가죽수갑은 2000. 3. 11.부터 2001. 4. 2.까지 사용되었고, 목포교도소로 이감된 후에도 2001. 4. 2.부터 6. 18.까지 청구인은 모두 466일 동안 계구를 사용한 채(이중 가죽수갑은 462일 동안 시승) 수용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광주교도소에서 작성한 '동태(시찰)상황' 및 계구사용감독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최초 계구가 사용된 2000. 3. 7.이후 초기 26일 동안은 단 한차례도 계구를 해제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목욕 등을 위해 짧으면 3일에 1회, 길면 1주일에 1회 정도 계구를 해제하였고, 해제시간도 1시간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 계구사용과 관련된 법규의 검토

가.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의 법적 근거

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행형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계구사용의 일반적인 요건과 함께 사용 목적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계구의 종류로서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의 4종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형법시행령은 각 계구별 사용 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는 제지에 불응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 사용하며, 사슬은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계구의제식과사용절차에관한규칙(1995. 5. 3. 법무부훈령 제333호, 이하 '계구사용규칙'이라 함)은 포승은 다시 호송용 포승과 개인용 포승, 수갑은 금속수갑과 가죽수갑, 사슬은 긴 사슬과 짧은 사슬, 안면보호구는 머리보호형 안면보호구와 소란방지형 안면보호구로 구분하고 있으며(계구사용규칙 제2조), '소장은 수용자에게 계구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용실태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계구사용규칙 제7조제1항), '사용중인 계구는 주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한다'(계구사용규칙 제7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계구사용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두어 교정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수용자의 연령·성격·범수·범죄의 내용·수용생활태도·교정사고의 전력·사고 유발의 위험성 등을 분석하여 사용할 계구의 종류·사용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며(계구사용규칙 제9조제1항), 계구는 교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계구사용규칙 제9조제2항), 교정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계구사용규칙 제9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계구사용에 관한 현행 법규정의 문제점

(1) 상위법에 위반되는 계구의 사용

계구사용규칙 제2조가 수갑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가죽띠로 허리에 고정시키고 양 손목을 다시 쇠고랑으

로 묶는 계구'를 의미하며, '정신이상자·중범자 등 충동적·우발적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큰 수용자에게 장기간 계속하여 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동 규칙 제5조제2항제2호).

이를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수용자의 팔과 허리를 완전히 밀착시켜 묶어 놓음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운동불가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는 수갑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수용자의 상반신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식사, 세면, 수면이나 가벼운 운동은 물론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위 규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가죽수갑이라는 것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상위 법규인 행형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설사 위 규칙이 규정하는 가죽수갑이 행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형법의 원칙(동법 제1조의3)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이념으로 하며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가죽수갑의 사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계구사용 요건상의 문제점

행형법 제14조는 계구사용의 요건으로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법시행령 제46조는 각 계구별 사용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를 그 요건에 포함함으로써 여전히 계구사용의 요건 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사용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많아 인권침해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행형법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외에는, 기타 계구의 계속적 사용에는 제한규정이 없으며, 다만 계구사용규칙 제9조제3항이 '교정사고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교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계구의 부당한 장기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계구사용 절차상의 문제점

행형법시행령 제45조는 계구를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구의 사용은 그 목적 자체가 대부분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된 사후보고가 원칙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고, 계구사용이 교도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상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사후보고 규정은 수용자의 인

권보다는 계호의 편의성만 중시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계구사용과 관련된 국제법규

1957. 7. 3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최저기준 규칙) 제33조는 "수갑(handcuffs), 연쇄(chains), 차꼬(irons) 및 구속복(strait-jacket)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연쇄나 차꼬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밖의 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호송중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의료상의 이유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기준규칙 제34조는 "이러한 계구는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3. 청구인에 대한 계구사용행위의 위헌성

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불가침의 권리이며, 수용자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조약 제1007호) 제10조는 '자유가 박탈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이며,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5조에서도 '누구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공동이념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형법도 이러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제1조의3에서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2000. 3. 7. 체포된 이후 2001. 6. 18.까지 무려 466일 동안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 등 총 3개의 계구를 착용한 채로 생활하였고, 특히 피청구인은 초기 26일 동안은 청구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계구를 해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세면 및 목욕, 식사, 수면 등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인 용변도 자유롭게 보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생활을 감내하여야 하였던바, 이는 헌법이 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2)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제1항은 신체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써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리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은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466일 동안 계속적으로 계구를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법률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수갑으로 상반신을 완전히 묶어 466일동안 지내게 한 것은 사실상 고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의 계구사용행위의 위법성

청구인은 2000. 2. 24. 법정에서 도주하여 같은 해 3. 7. 서울에서 체포된 이후, 광주교도소에 재입감되자마자 피청구인에 의해 곧바로 조사수용되어 금속수갑 2개가 채워졌고, 같은 해 3. 11.부터는 가죽수갑 1개가 추가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행형법 제46조제2항제5호 및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에 의할 경우 금치는 단순히 징벌방에 가두어 두는 것만을 의미할 뿐, 계구의 사용은 징벌의 부과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수갑 등의 계구를 사용한 채로 징벌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실사 수갑 등과 같은 계구를 행형법상의 이른바 '계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적법한 계호의 목적에서 행해진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호행위

라 함은 '계호권자가 구금확보와 질서유지 및 수용자 보호를 위해 행하는 일체의 조치'를 의미하는바, 계호행위에서 중요한 문제는 계호목적과 이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제한의 정도이며, 이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즉 소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제한은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또는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용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계구를 이용한 계호행위의 경우, '계호'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가져오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필요 최소한도로 법률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미 사동내의 징벌거실⁴⁾에 수용되어 있었고, 특정강력범과 문제수용자로 지정·관리되고 있었던 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중으로 시건된 거실에 수용된 것이었고 그 이상의 계호는 근무자의 확충만으로 충분할 것이며, 청구인을 다시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로 몸을 묶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두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계구사용행위는 계호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청구인에게 사용된 계구는 '계호'의 목적만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청구인에 대한 징벌기간(2000. 3. 7.~2000. 5. 6.)이 끝난 이후에도 2001. 6. 18.까지 466일 동안 계속해서 계구를 사용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필요한 기간 이상으로 청구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결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전 세계의 공동이념이 되었으며, 우리 헌법 제10조는 그 후단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무한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용자의 경우 그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록 수용자의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가능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

4 당시 광주교도소 9사동 징벌거실은 1, 2, 3.방을 하나로 묶어서 벽을 만들고 한 개의 출입문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좁은 복도가 다시 있고, 다시 3개의 거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거실마다 별도의 출입문과 시건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다시 말해 2개의 문을 들어가야 징벌실로 들어갈 수 있다.

의 최소성의 원칙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구사용은 행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억압하고 관리의 편의만을 도모하고자 하였을 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또한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끝.

2003. 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의 결

사 건 : 02진인126, 329/02진인76, 100, 1245(일부병합) 부당계구사용

진 정 인 : 1. 권00

2. 이00

3. 채00

4. 강00

5. 김00

피진정인 : 1. 청송제2교도소 교도관 김00(현재 청송교도소 근무)

2. 수원구치소 교도관 강00

3. 청송제2교도소 교도관 김00

4. 청송제2교도소 교도관 박00(현재 의정부교도소 근무)

5.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김00, 김00, 안00

피진정인 :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1. 행형법상 계구사용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충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하도록 하며,

1. 계구의 종류 중 사슬과 가축수갑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구금시설 수용 중, 피진정인들에 의하여 금속수갑 및 사슬을 부당하게 시정 당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02진인126

(1) 진정인 권00

진정인은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1. 2. 20. 검방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성한 청원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2. 21. 조사실에 수용되었는바, 당시 자해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갑과 사슬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2) 피진정인 김00

진정인은 2001. 2. 20. 16:00경 수검 근무자에 의하여 허가받지 않고 작성한 청원서와 도서열독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1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다음날인 2. 21.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불러 관규를 준수할 것을 권유하자, 흥분하여 눈을 부라리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큰소리로 "나는 그런 절차를 알 필요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으니 징벌을 먹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그냥 있을 줄 아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달려들므로 진정인이 자살 폭행 자해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사슬과 수갑을 사용하게 되었다.

나. 02진인329

(1) 진정인 이00

진정인은 수원구치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2001. 10.경 정신질환이 발작하여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로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장기간의 계구사용으로 무릎관절과 허리에 통증이 심해 출소 후에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진정인 강00

진정인은 2001. 10. 25. 운동 후 혼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여 담당근무자가 보호독거 사유 및 입실거부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고성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극도의 흥분상태로 몸을 떨고 타인을 향해 공격성 성격을 표출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진정인의 보호 차원에서 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근무자에게 폭언 및 협박·위협하고 거실 문을 차거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계구를 계속 사용하였다.

다. 02진인76(일부)

(1) 진정인 채00

진정인은 2001. 6. 21. 청송제2교도소 수용 중 검방시 부정물품(건전지 껍데기를 갈아서 만든 칼, 이하 칼)이 발견되어 조사 수용됨과 동시에 금속수갑과 사슬이 시정되었다. 장기간의 사슬 시정으로 용변 보는 것이 불편하여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수면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조사 수용된 다음날 관규준수의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계구를 계속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2) 피진정인 김00

2001. 6.경 거실검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진정인의 거실에서 부정물품(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바로 진정인을 조사수용하기 위해 관구실로 데려갔더니, 진정인이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니들이 가져다 놓고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니냐? 니들 맘대로 해봐라'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진정인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살 및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구를 사용하였다.

사슬은 2001. 6. 21.부터 26.까지 6일간, 금속수갑은 2001. 6. 21.부터 7. 9.까지 19일간 시정 하였는데, 진정인의 경우 조사 수용된 후에도 불식을 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였고 계구를 해제하려 해도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흥분된 상태였으며, 평소에도 '수틀리면 한번 추가 먹을 생각하고 사고 치겠다'는 말을 하였다.

라. 02진인100(일부)

(1) 진정인 강00

진정인은 2001. 1. 12.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왜 나를 못살게 구느냐'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며 사슬을 추가로 채웠다. 사슬이 너무 심하게 조여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취침 및 식사, 세면 등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2) 피진정인 박00

2001. 1. 12.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자신의 행위를 완강히 부인하며 머리를 책상에 받으려고 하여 제지한 적이 있으며, '왜 나를 괴롭히느냐, 차라리 죽여 달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사슬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다.

통상적으로 수용자들이 관규를 위반하여 조사 수용될 때는 매우 흥분되어 있고 징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무척 불안한 상태에 있으므로 조사기간에는 소란, 폭행, 자해 및 자살 등을 방지하지 위해 사슬을 채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진정인이

조사수용 된 이후 2001. 1. 16. 자 진술조서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고 하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 02진인1245(일부)

(1) 진정인 김00

진정인은 2001. 9. 6. 영등포구치소 1동 하층 4실에 입소한 후 21:00경에 사동 근무자에게 '나는 환자인데 입병시켜주지 않고 왜 일반거실에 수용하느냐'며 병실에 입병시켜달라고 하자, 김00 관구계장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불러, '하루를 못 참냐? 지금은 의무과장이 없으니 내일 의무과장을 면담하고 나서 결정하자'고 해 일단 거실로 돌아왔다. 이후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그릇이 깨졌는데 자해를 하려 한다며 김00 계장이 금속수갑을 뒤로 채워 23:00경 조사거실에 수용시켰다.

같은 날 23:40경 김00 계장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사슬이 추가 시정되어 금속수갑은 2001. 11. 2.까지 56일간, 사슬은 10. 29.까지 52일간 시정 당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게 필요이상으로 계구를 시정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피진정인

① 김00

진정인이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한 날인 2001. 9. 6. 21:00 1하 사동근무자로부터 진정인이 병실입병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진정인을 관구실로 불러 상담하면서, '지금은 의무관이 퇴근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내일 의무관이 출근을 하면 그때 의무관을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하여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다.

그 후 21:40경 담당근무자로부터 진정인이 거실에서 플라스틱 식기를 깨서 팔뚝을 수 회 긁는 자해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가보니, 자해한 상처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가 조금 보이는 상태라 간단한 치료를 한 후 관구실로 데려가 후속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다시 거실로 돌려보냈고, 그 당시는 관구 근무교대시간이 23:00였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② 김00

2001. 9. 6. 23:00경에 교대하여 1관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1동하층을 순시 중에 사동근무자로부터 진정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가보았더니, 진정인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밤늦은 시간에 소란을 피우지 말고 자라'고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요구를 굽히지 않아 관구실로 불러냈고, 자해 방지를 위해서 사슬을 시정하였으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 자술서를 요구하자 '본인은 시각장애인이고 중풍이 있어서 자술서를 쓰지 못 한다'고 하여 야간이라 더 이상 실랑이를 할 수가 없어 귀실시켰다.

③ 안00

2001. 9. 7. 오전에 출근을 하였더니 진정인이 소란과 자해로 인해 금속수갑과 사슬을 시승한 채 수용되어 있었다.

진정인에 대하여 금속수갑은 2001. 9. 6.부터 11. 2.까지 55일간, 사슬은 2001. 9. 6.부터 10. 11.까지 35일간 사용하였는데, 중간에 점검을 했지만 계구를 해제할 요건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구를 해제하지 않았다. 2001. 10. 11. 진정인이 '앞으로 관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고 근무자의 지시에 순응하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진정인은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언제든지 교정사고를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슬은 같은 날 해제하고, 금속수갑은 계속 시갑하였다.

사슬은 자살 및 자해방지용으로 사용하는데, 진정인은 2001. 9. 6. 자해를 하고 2001. 9. 11.에 또 자해를 했으며, 사슬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살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02진인126

진정인의 신분카드, 징벌집행부, 자술서 및 진술조서, 징벌위원회 출석포기서 등에 의하면,

(1) 진정인은 특수강도등의 혐의로 1999. 11. 8.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0. 7. 2.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10. 30. 청송제2교도소로 이송되어 1하24방에 수용되었다.

(2) 진정인은 서울구치소 수감당시 진정인에게 집행된 부당한 징벌 등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2001. 2. 7. 담당근무자에게 청원서 집필보고전을 내어 달라고 한 후, 집필허가가 바로 날 것 같아 당일 16:00경 교육을 마치고 거실에서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3) 진정인은 2001. 2. 20. 16:00경 검방시 수감근무자에게 허가 없이 작성해 놓은 위 청원서와 도서열독 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은 책(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1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는바, 위 수검이 있기 전까지 진정인에 대한 집필보고전은 허가되지 아니하였다.

(4) 진정인은 2001. 2. 21. 12:00경 청원서 제출 건으로 관구실에서 피진정인과 면담을 하던 중 2. 20. 적발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허가 없이 작성한 청원서는 제출할 수 없다며 자술서를 쓰라고 하자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나는 그런 절차를 알 필요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으니 징벌을 먹이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그냥 있을 줄 아느냐"면서 자술서 쓰기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5) 진정인은 2001. 2. 21. '성격이 조폭·간교하여 자살, 폭행, 자해의 우려가 농

후하므로 계구(금속수갑, 사슬)를 사용하여 보호수용'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의견에 따라 금속수갑과 사슬이 시정되었다.

(6) 진정인은 2001. 2. 27. '앞으로 소내 수용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수용생활을 할 때 근무자님의 지시명령에 잘 따르는 모범 수형자가 되겠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징벌위원회 출석을 포기'한다는 출석포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살, 자해, 폭행 및 심적 불안이 해소되었다'며 계구를 해제하였다.

나. 02진인329

진정인에 대한 판결문, 현인서, 동태시찰보고서, 근무자경위서, 진정인의 자술서, 서울대학병원의 진단서 및 건강진단부에 의하면,

(1) 진정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01. 9. 19. 구속되어 같은 달 26.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2001.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2) 진정인은 측두엽 간질 증상으로 1986. 6.부터 구속된 2001. 9.까지 서울대학 교병원에서 '외래 약물투여와 경과관찰 중'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3. 정신지체 장애3급으로 판정받았다.

(3) 2001. 9. 26. 진정인이 수원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작성된 현인서에는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병원에서 신경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과 입소당시 '정신 질환약 복용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9. 27. 의무과 진료 후 정신질환제인 테그레놀을 출소 시까지 정기 투약한 사실이 있다.

(4) 진정인은 2001. 9. 26. 수원구치소에 입소하여 나52-17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해 10. 3. 01:20 경 갑자기 일어나 동 거실의 수용자 진정의 최00를 발로 차고 손으로 목을 조이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3인 혼거실인 병사 10실에 임시 수용되었고, 임시 수용된 후에도 위와 같은 증세를 보여 폭행 및 자해 등 교정사고 우려가 있다하여 금속수갑이 사용되었다가 5일 후인 같은 달 8. '폭행 및 자해 등 교정사고 우려가 현저히 해소되고 간질발작증세 등이 고려'되어 수갑이 해제되었다. 같은 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격성 정신장애로 이상증세를 보이며 성격이 포악하고 공격적이어서 교정사고의 우려가 많아 혼거생활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CCTV가 있는 거실에 보호독거 수용하였다.

(5) 보호독거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2001. 10. 25. 10:40 경 운동을 마친 후 '혼자 있으면 잠이 오지 않고 헛생각이 떠오르는 등 머리가 아프다'며 혼거수용을 요구하며 입실을 거부하였고, 폭행, 자해 및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하여 금속수갑과 사슬이 시정되었다.

(6) 2001. 11. 13. 당시 담당 교도관 전00은 '진정인은 현재 시갑 중인 자로 그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또다시 관규위반행위를 할 시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하므로 사슬을 해감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한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행, 자해 및 교정사고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용 중이던 금속수갑과 사슬 중 사슬만 해제하였는바, 사슬은 20일 동안 사용되었다.

(7) 2001. 11. 19. 교도관 전00은 '진정인은 현재 시갑 중인 자로 그 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또 다시 관규위반행위를 할 시에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서약하므로 수갑을 해감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한다는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폭행, 자해 및 교정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금속수갑을 해제하였는바, 금속수갑은 26일 동안 사용되었다.

다. 02진인76(일부)

진정인 문답서, 동정시찰부 및 계구사용감독부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1. 6. 11. 청송제2교도소로 이입되어 1동 상층 15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달 21. 09:45 경 진정인이 운동나간 사이에 실시된 검방에서 위 거실의 화장실 앞 관물대와 시멘트 사이에서 건전지 껍질로 갈아 만든 칼(4cm×3cm)이 발견되어 당일 조사 수용되었고, 금속수갑과 사슬이 시승되어 사슬은 같은 해 6. 26.까지 6일간, 금속수갑은 같은 해 7. 9.까지 19일간 사용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6. 26. 징벌위원회에서 부정물품 제작 및 은닉 등을 이유로 금치2월의 처분을 받았다.

라. 02진인100(일부)

진정인 문답서, 동정시찰부, 계구사용감독부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금품수수 및 소란 등의 이유로 2001. 1. 11. 금속수갑이 채워져 조사 수용되었으며, 2001. 1. 12. 소란 등의 이유로 사슬이 추가로 채워졌고, 같은 달 22.까지 금속수갑은 12일간, 사슬은 11일간 시승되었다.

마. 02진인1245(일부)

진정인 문답서, 동정시찰부, 계구사용감독부, 교도관 이00 교위 작성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1) 진정인은 2001. 9. 6. 영동포구치소 1동21실에 수용된 이후 같은 날 21:00 경 소란 및 자해를 이유로 금속수갑이 채워졌고, 같은 날 24:00경 다시 소란 및 자해를 이유로 사슬이 추가로 채워져 금속수갑은 2001. 11. 2.까지 55일간, 사슬은 2001. 10. 11.까지 35일간 시정되었다.

(2) 진정인은 2001. 9. 6. 21:40경 '본인은 환자인데 병사에 입병시키지 않고 일

반거실에 수용하였다'며 병실 입병을 요구하며 화장실에서 거실내의 플라스틱 식기를 파손하여 본인의 좌측 팔뚝을 3, 4차례 긁는 등 자해를 하였고, 2001. 9. 11. 08:45경 의무과 진료에 대한 불만과 금속수갑 및 사슬을 느슨하게 채워줄 것을 요구하며 거실내의 식기를 파손하여 그 일부조각으로 자신의 양쪽 얼굴을 각 2회씩 긁어 자해한 사실이 있으며, 2001. 9. 19. 07:30경에는 사동청소부 김00과 모포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동 김00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3) 진정인은 2001. 10. 11.자로 '...지금까지 반복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등 관규를 어지럽혀 왔으나, ...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또다시 소란을 피우는 등 관규를 어길 시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사슬을 차고 처벌을 받을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요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2001. 10. 10.자 교도관이점식의 근무보고서에도 '... 1동하 12실에 수용중인 1740 김00을 면밀히 관찰한 바 위 김00은 수차에 걸쳐 본 근무자와 수감생활을 잘 하겠으며 절대로 관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하겠다고 다짐하며 근무자의 지시사항에 순응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는 자이므로 보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 단

가. 02진인126

(1) 계구의 사용은 수용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실제 계구사용의 남용으로 인권침해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바,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그 제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따라서 계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인 바, 진정인에 대한 계구 사용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계구가 사용된 7일 동안 진정인이 폭행이나 자살, 자해를 할 우려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구를 해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사슬은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갑과 사슬을 동시에 사용한 점, 계구를 사용한 7일 동안 단 한 차례 목욕을 위해 1시간 동안만 해제한 것은 모두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지고 사슬로 묶인 채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대소변 처리 등 일상적 용무를 보아야 했던 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계구사용으로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02진인329

진정인은 정신지체 장애3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정기적인 약물투여 중에 있었고, 거실 수용 중 타 수용자에 대한 공격적 행동표출 등 이상증세와 입실거부의 소란이 있었던 바, 진정인에 대한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진정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보호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CCTV를 통해 교정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슬과 금속수갑을 각 20일, 26일간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은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02진인76(일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조사수용 중 흥분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직원에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여 계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계구사용이 불가피하였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그 후 관규준수의 각서를 제출하고 반성의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식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사슬과 금속수갑을 각 6일, 19일간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계구사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02진인100(일부)

진정인의 경우 계구사용 당시 소란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그 이후 교정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금속수갑과 사슬을 각 12일, 11일간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계구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계구를 사용함으로써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02진인1245(일부)

(1) 진정인이 2001. 9. 6.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한 이후 입병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실 내 식기를 파손하여 그 일부 조각으로 자신의 왼쪽 팔뚝을 긁어 상처를 내는 등의 자해를 하였는바, 이에 금속수갑과 사슬을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진정인이 2001. 9. 11. 식기를 파손하여 자신의 얼굴을 2차례 긁는 자해행위를 한 이후에는 금속수갑과 사슬을 착용할 만한 행위가 계속된 기록이 없는 바, 단지 소란, 폭행, 자해 및 자살의 방지라는 막연한 목적으로 금속수갑과 사슬을 각 55일, 35일간이나 사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계구사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은 것으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계구사용의 요건 및 종류의 문제점

가. 행형법 제14조는 계구사용의 요건으로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하여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용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많아 인권침해의 요소를 안고 있다. 또한 행형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서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 외에는, 기타 계구의 계속적 사용에는 제한규정이 없으며, 다만 계구의제식과사용에관한규칙(이하 계구사용규칙) 제9조제3항이 '교정사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어서, 교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계구의 부당한 장기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계구사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계구사용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해야 할 것이며, 계구는 징벌의 수단인 아닌 계호의 일종이므로 수용자가 타인 혹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요건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행형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행형법 제14조제2항은 계구의 종류로서 포승, 수갑, 사슬, 안면 보호구의 4종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1957. 7. 3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33조는 "수갑,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연쇄나 차꼬는 계구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구금시설내에서 금속수갑과 함께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슬'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구의 종류로 규정함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구사용규칙 제2조가 수갑의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가죽수갑은 '양팔의 팔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가죽띠로 허리에 고정시키고 양 손목을 다시 묶는 계구'를 의미하는 바, 이를 착용하였을 경우에는 수용자의 팔과 허리를 완전히 밀착시켜 묶어 놓음으로써, 수용자를 운동 불가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된다. 이는 수갑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수용자의 상반신을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식사, 세면, 수면이나 가벼운 운동은 물론 용변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활동마저 완전히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위 규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가죽수갑이라는 것은

행형법에서 계구의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수갑'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상위 법규인 행형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인들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계구사용행위는 계구사용이 개시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진정인들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된 위 계구 사용은 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구사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7. 14.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원 조미경

위원 신동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서

사건번호 : 02적인1033

사 건 : 인격권 침해의 건

진 정 인 : 이○○(000000-0000000)

○○북도 ○○시 ○○동 ○○3차 ○○○

피진정인 : 1. 황○○, ○○경찰서장, 총경
2. 권○○, ○○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3. 이○○, ○○경찰서 수사1계장, 경위
4. 박○○, ○○경찰서 수사과, 경장
5. 김○○, ○○경찰서 의무경찰
위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 ○○북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경찰서의 유치장담당직원들이 면회시의 유치인에게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수갑을 사용함으로써 유치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2002. 6. 15. 11:00경 피진정인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면회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황○○은 ○○경찰서 서장으로서 ○○경찰서 유치장 관리업무에 대한 최종감독권자이다.

다. 피진정인 권○○은 ○○경찰서의 수사과장으로서 진정사건 발생 당시 ○○경

찰서의 유치인보호주무자이다.

라. 피진정인 이○○은 ○○경찰서 수사1계장으로서 진정사건 발생 당시 ○○경찰서의 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한 자이다.

마. 피진정인 박○○은 ○○경찰서 수사과의 경장으로서 진정사건 발생 당시 ○○경찰서 유치인보호관이다.

바. 피진정인 김○○은 ○○경찰서 의무경찰로서 진정사건 발생 당시 유치장 보조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사. ○○북도지방경찰청장은 위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 및 증거

가. 진정인의 주장

○ 진정인은 2002. 5. 16. 10:30경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같은 날 11:00경 진정의 최○○와 면회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여서 굳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었고 자해 등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김○○은 규정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 유치판결을 받은 자에게조차 최소한의 인격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바, 피진정인들이 유치장에 유치중인 미결수에게까지 면회시 수갑을 채운 것은 유치인의 명예와 인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과잉조치이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 유치인을 면회시킬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으나 진정인은 유치장에 입감할 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와 유치장 내·외부 및 창문 등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 초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과 명예, 이웃·친지·동료들의 눈총을 의식하여 도주, 자살 및 자해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였고,

○ 경찰서 유치장은 피의자 조사 내지 신병 인수·인계 등으로 유치인의 입·출감이 빈번하므로, 진정인의 도주·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구두지시를 받아 수갑을 채웠던 바, 진정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수갑사용이 불가피하였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 진정인은 2002.6.15.(토) 10:30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4호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날 11:00경 진정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형인 진정의 최○○ 등 3인과 면회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박○○ 및 김○○석은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로 면회를 하도록 했다.

○ 수갑사용 경위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자해우려와 유치장내의 계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면서 그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박○○ 및 김○○의 진술, 경찰서 유치장의 실내조명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관찰할 수 있었던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도주나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진정인이 2002. 6. 15.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여 진정의 최○○를 면회하기 위하여 출감할 때까지 약3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나, 위 경찰서 유치장은 실내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보호실의 출입문에 이중으로 쇠창살이 쳐져 있어 피진정인들이 그 안을 관찰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진정인이 자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진정인이 입실했던 4호실은 유치장 맨 안쪽 끝에 위치해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4호실 문 앞에서 들여다보아야 하나 피진정인 박○○ 및 김○○이 "진정인이 입감할 당시 유치장규정에 따른 각종 문서를 정리하느라 바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2) 피진정인 박주석은 "진정인이 교사 신분으로 인한 체면 때문에 더 수치스러워 할 수 있고 그래서 자해 염려를 배제하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처음 면회시 교사인줄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정인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살폈다는 점 외에는 진정인이 실제로 자해 등의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를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진정인과 비슷한 시기에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유치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진정인과 비슷한 경미한 범죄 혐의로 유

치된 피의자들로서 '자해우려'로 관찰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회시 예의 없이 수갑이 채워졌다.

○ 비록 피진정인들의 주장처럼 진정인의 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면회실은 유치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치장은 수사과 사무실 내에 설치된 문으로만 입출입이 가능할 뿐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입실해 있던 유치장 보호실(4호실)에서 면회실까지는 10m 조금 넘는 정도의 거리에 불과한 점, 면회실 내에는 피진정인 김○○이 2~3m거리에서 면회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밖에는 피진정인 박○○이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진정인이 유치장에 들어올 때 입감신체검사를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도주·자해 등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인보호관 등의 계호만으로도 충분히 유치인에 대한 제압 및 질서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 한편, 피진정인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치인 면회시 수갑을 채우지 않으며 자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었던 2002. 6.15.을 전후한 시점인 2002. 6. 11.부터 같은 달 17.경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유치인 중 14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면회시 수갑을 찻는지 여부를 전화로 조사한 결과, 전화가 연결된 8인 중 입감 중에 면회를 하지 않았던 1인을 제외한 7인이 모두 수갑을 차고 면회를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비록 이 조사가 소수의 유치인을 표본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면회시마다 수갑이 사용되었다"고 참고인들이 응답하고 있고, 위 참고인들의 범위가 진정인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중범죄자나 자해우려자가 아닌 유치인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수갑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진정인 이○○은 ○○경찰서 수사1계장으로서는 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 박○○ 경장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수갑사용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 피진정인 황○○ 총경은 ○○경찰서의 유치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책임자이고 같은 권○○ 경정은 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보호관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자인 바, 위 피진정인 이○○ 경위, 박○○ 경장 및 김○○ 의경 등 유치인보호관들이 도주·자해 등의 우려가 없는 진정인을 포함한 유치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수갑을 사용해 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치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여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할 때, 진정인은 면회당시 실제로 자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자해 등의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

치인보호직원 등의 근거리 계호만으로도 자해 등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수갑을 사용한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 면회당시의 상황, 진정인의 신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과잉조치로 판단된다.

○ 더구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유치인들이 면회시에 수갑을 찬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일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수갑사용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장 내 수갑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면회 시의 유치인들에게 수갑을 채움으로써 도주·자해방지,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수갑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등을 위반하였으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3.

국가인권위원회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원 조미경

위원 신동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서

사건번호 : 2002 진기 6

사 건 : 서신검열 제도 개선에 관한 진정

진 정 인 : 정 ○ ○

○○도 ○○시 ○○동

피진정인 : 법무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주 문

1. 피진정인이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에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행위는 진정인을 포함한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 및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구금시설 내 서신검열과 관련하여, 검열한 후 검열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근거규정인 계호근무준칙 제250조 및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제5조 제2항의 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에 수용되었다가 2002. 4. 17.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3. ○○교도소로 이송된 자로, 수용 기간 중 수용자가 외부로 발송하는 서신을 검열한 후 검열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서신 발신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2002. 4. 1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다.